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5월 3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도서관법」 개정(제24조)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도서관법」 조례 위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서울특별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각각 변경(안 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서관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협의완료(신설·강화되는 사항없음)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사항 없음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협의완료(원안동의)

(4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평가) : 협의완료(원안동의)

(5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협의완료(갈등없음)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6. 3. 17. ~ 2016. 4. 6.)결과 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※ 작성자 :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김지안 (☎ 2133-0227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”을 각각 “행정1부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구성)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8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<u>시장</u> 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.	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<u>행정1부시장</u> 이 되며 -----.
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당연직 위원은 <u>시장</u> , 서울도서관장,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당연직 위원은 <u>행정1부시장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세입·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 :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김지안(2133-0227)